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가합5900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2021나205026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가합590028 판결

전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신수

변론 종결 2021. 10. 14.

판결 선고 2021. 11. 11.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47,460,057원 및 그중 344,996,877원에 대하여 2020. 9. 22.부터

2020. 11. 6.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가.항에 기재된 돈 중 217,353,906원 및 그중

215,607,516원에 대하여 2020. 9. 22.부터 2020. 11. 6.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수원시 권선구 D 대 73m²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20. 3.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0. 3. 11. 접수 제347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9. 5. 31.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는 250,000,000원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212,500,000원, 보증기한을 2020. 5. 29.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는 150,000,000원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127,500,000원, 보증기한을 2020. 5. 29.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B는 2020. 3. 5. 피고 C에게 수원시 권선구 D 대 73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2020. 3. 11.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347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다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20. 9. 21.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215,607,516원(= 원금 212,500,000원 + 이자 3,107,516원)을,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129,389,361원(= 원금 127,500,000원 + 이자 1,889,361원)을 각 변제한 사실, 원고가 위 대위변제로 인한 채권 보전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가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551,740원의 대지급금이 소요된 사실 및 피고 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증료가 1,911,440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관련 1,194,650원 +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 관련 716,790원) 발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회사 및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으로서 347,460,057원(= 각 대위변제원리금 215,607,516원 + 129,389,361원 + 대지급금 551,740원 + 보증료 1,911,440원) 및 그중 대위변제원리금 344,996,877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한 다음날인 2020. 9.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2020. 11. 6.까지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다툼이 없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B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회사의 구상금 중 217,353,906원(= 대위변제원리금 215,607,516원 + 대지급금 551,740원 + 보증료 1,194,650원) 및 그중 대위변제원리금 215,607,516원에 대하여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변제한 다음날인 2020. 9.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20. 11. 6.까지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2494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 시점인 2020. 3. 5.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는 2020. 3. 31.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상환을 연체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2020. 3. 5. 무렵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개연성은 실제로 현실화되어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후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를 하여 연대보증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피고 B의 채무초과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가 2020. 3. 5.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을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부천시 E아파트 제14층 F호	190,000,000원	G은행	50,000,000원
H은행	7,220,000원		
I카드	13,000,000원		
J카드	10,000,000원		
K카드	11,528,000원		
기업은행	189,000,000원		
원고	212,500,000원		
L보증보험	44,617,000원		
		M캐피탈	14,849,000원
적극재산 합계	190,000,000원	소극재산 합계	552,714,000원
※ 유일한 적극재산인 위 아파트의 가액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20. 3. 9.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190,000,000원으로 본다.			

이와 같이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피고 B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다 제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회사는 2019. 8. 5. 'N'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을 운영하던 피고 C에게 천안시 소재 O공단의 패널, 바닥트렌치, 전기공사를 63,4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제2조는 위 공사기간을 2019. 8. 6.부터 같은 달 20일까지로 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6조에는 피고 회사가 피고 C에게 계약 당일 31,700,000원을, 패널공사가 완료된 후에 1차 중도금으로 25,000,000원을, 코킹작업 후에 잔금으로 6,7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추가로 피고 C에게 공사금액을 34,600,000원으로 하는 2층 패널 칸막이 공사, 전기공사, 배수공사 등을 도급하였다.

② 피고 회사는 2019. 8. 6. 피고 C에게 계약금 31,700,000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57,178,000원(= 2019. 8. 6. 31,700,000원 + 2019. 8. 19. 4,478,000원 + 2019. 8. 29. 5,000,000원 + 2019. 9. 30. 5,000,000원 + 2019. 10. 10. 1,000,000원 + 2019. 10. 14.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 회사는 2019. 11. 11. 피고 C이 운영하는 N에 위 공사 및 추가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42,960,500원을 2019. 11. 21.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결제대금 지급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④ 피고 B는 2020. 2. 28. 피고 C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을 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B는 2020. 3. 5. 피고 C에게 그중 대지 부분인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2020. 3. 5.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였던바²⁾,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본 피고 B의 재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으로 재산이 감소하여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피고 C은 피고 B가 소유하는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대물변제로 인하여 피고 B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당초 공사완료기간으로 정한 2019. 8. 20.까지 피고 C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고, 남은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분할하여 지급한 후에는 공사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 B는 2019. 11. 11. 피고 C에게 결제대금 지급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준 후에도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2020. 3. 5. 피고 C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게 되었던바, 이와 같은 대물변제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이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0. 3. 11. 접수 제347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성수

판사백소영

판사임현수

1) 아래 채권자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2)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각 부동산매매계약 중 2020. 2. 28.자 부동산매매계약에만 그 실질이 대물변제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B와 피고 C의 공사대금 미지급과 매매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역시 대물변제의 실질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